

[별표 5]<개정 1987.12.11.>

계량기사등의 유별구분 (제6조 관련)

유 별	구 분
계량기사 (전기·기계 또는 물리분야)	모든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
계량기능사 (전기·기계 또는 물리분야)	모든 계량기의 수리